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 수집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5년 경과 시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II. 검토의견

1. 영상정보 처리 관련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
(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상정보를 익명·가명처리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2조제1항제12호1)에 따른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자율주행자동차’ 외에 ‘일반 자동차’에 설치된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²⁾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직접 촬영한 영상정보 외에 다른 일반 자동차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까지 ‘수집’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직접 촬영하여 수집한 영상정보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제20조의2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

1)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당초의 개정안은 대상을 ‘자율주행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활용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분이 ‘자동차’로 수정되었음.

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기술 개발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 ----- ----- ----- ----- 촬영하여 수집할 ----- 수집한 ----- ----- ----- -----. ② ~ ④ (생략)
---	--

2. 영상정보 파기시한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안 제20조의2제4항 및 안 제55조제1항제2호)

안 제20조의2제4항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한 경우 5년 경과 시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55조제1항제2호는 파기 등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20조의2제4항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와 ‘지체 없이’는 논리적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 기한의 기산점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조문의 문리해석상 그 기한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어 보임.³⁾

3)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안 제20조의2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파기의 ‘기한’이 아

또한, 안 제20조의2제4항은 영상정보의 ‘파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55조제1항제2호는 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그 구체적 의미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봄.

따라서 안 제20조의2제4항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로 명확하게 정비하며, 그 밖에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제20조의2제4항 및 안 제5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들은 수집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 수집한 ----- 수집한 <u>날부터 5년이 지나면</u> ----- ----- <u>영상정보를</u> ----- ----- -----.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 -----.

나라 파기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1. (생략)	1. (개정안과 같음)
2.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u>개인 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2. ----- <u>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u> -----
② ~ ⑤ (생략)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3. 영상정보 파기 관련 경과조치 추가(안 부칙 제2조)

안 부칙 제2조는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안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5년’의 기한이 도과하였거나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영상정보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위 개정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그 이용을 마치고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명시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부칙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u>적용례</u>) <u>제20조의2제4항의</u> 개정규정은 이 법	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u>적용례</u> 및 <u>경과조치</u>) <u>제20조의2제4항</u> 및 제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후단 신설>	<u>55조제1항제2호의 -----</u> <u>-----</u>. 이 경우 <u>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들은 제20조의</u> <u>2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u> <u>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법 시행 전에</u> <u>수집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u> <u>하여야 한다.</u>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